

2019년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10. 31.(목요일), 10:3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김경숙(분과위원장), 박재화, 박정인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전문위원

2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<의결안건>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 제1호 :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

· 제2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3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○ 제1호 :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

- 주요내용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

- 회의결과: 김경숙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

○ 제2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,800건(안전번호 제2019-138309호~139824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안건상정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번 회의는 의결 안건이 두개임
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이며, 제2호 안건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임

○ 제1호 :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

- 성원영 전문위원 :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김경숙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
- B 위원 : 이의 없음
- C 위원 : 동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만장일치로 김경숙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

(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숙 위원을 선출함”

○ 제2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번 회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첫 개최이므로, 진행 편의를 위해 전문위원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음

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-138309호~139824호로 37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총 4,800건임

안건번호 제2019-138309호~13832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,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

안건번호 제2019-138309호~138329호는 각 게시물에서 ‘페어리 테일’ 263화, 266화~269화를 제공하고 있음

(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‘페어리 테일’은 일본 TV도쿄, 한국 애니원, 챔프TV, 애니박스에서 2016년 방영한 일본 애니메이션임

(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) 안건번호 제2019-138309호 게시물은 ‘페어리테일’ 266화 전체분량(24분 25초, 우리말 자막 포함)을 제공하고 있음

- 김경숙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-138309호~138329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B 위원 :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,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

- C 위원 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
- A 위원 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
- D 위원 : 이견이 없음
- 김경숙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138309호~13832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38330호~13982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, 만화, 출판물,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
(영화 '라이온 킹'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138815호는 애니메이션 '라이온 킹'과는 다른 저작물로 2019. 7. 17. 개봉한 Walt Disney의 실사영화임
(게임 '옥토파스 트래블러'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139045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에 발매된 최신 컴퓨터프로그램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으로, 정품은 약 6만4천8백 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닌텐도임
참고로 보호원은 상업적 성격의 저작물을 영상(방송·영화), 음악, 만화, 출판물, 게임, 소프트웨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, 본 건의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보호원 내부의 분류 방식에 따라 '게임'으로 분류되었음
(만화 '전생했더니 검이었습니다 (출판 : 소미미디어) (2019)'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139292호는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권당 약 4,500백 원에 판매 중임

‘소미미디어’의 출판권 설정 여부, 국내 정발본의 데드카피인지 아니면 일본 출판물의 자체 번역본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함

(음악 ‘떨어지는 낙엽까지도(가수: 헤이즈)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건번호 제2019-139482호의 음원파일은 2019. 10. 13. 발매된 곡으로 앨범 ‘만추’에 수록되어 있음

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곡의 최신 가요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

- D 위원 : 안건번호 제2019-139482호는 돈을 받고 판매가 되는 사안인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웹하드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안임

- B 위원 : 계정 소유자가 판매를 하는 사안인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계정 소유자가 판매하는 사안임

(영화 ‘양자물리학 (2019)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139547호는 웹하드에서 2019. 9. 25.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판매한 사안임

(방송 ‘쌈니다 천리마마트(2019)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139555호는 tvN 채널에서 2019. 9. 20.부터 현재까지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

해당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임

(음악 ‘Hello My Lover (가수: 백아연)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139583호는 최신 인기가요 음원파일 100개를 압축하여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

특히 ‘Hello My Lover’는 2019. 10. 11. 발매된 곡이고 SBS 금토드

라마 '배가본드'의 OST 곡임

- D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39583호는 'Hello My Lover (가수: 백아연)' 곡명을 게시물 제목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게시자가 'Hello My Lover'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은 아니며,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중점 저작물로 선정된 저작물을 대표로 기재한 것임
(영화 '그것: 두 번째 이야기 (2019)'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139732호는 2019. 9. 4. 개봉한 스릴러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
- B 위원 : 검토보고서를 보면 OSP명으로 '다음(DAUM)'이 있는데, 다음(DAUM) 카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음
'다음(DAUM)'은 '카카오'와 합병을 하여 하나의 법인이지만,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나 시정권고 심의를 할 때는 '다음(DAUM)'과 '카카오'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
- B 위원 : 더불어 OSP명의 '밴드'의 범위도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현재 '네이버'와 '밴드'는 모자회사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으로 알고 있음
네이버 회원 가입과 밴드 회원 가입은 별개임
검토보고서의 '밴드'는 네이버 '밴드'를 의미하며, '네이버'는 '밴드'를 제외한 네이버 블로그, 카페 등 서비스를 의미함

- B 위원 : '밴드'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밴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든 밴드를 대상으로 하는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밴드의 경우 구별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음
 보호원은 특정 밴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복제물에 대해서만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
 한편 국민신문고나 민원인이 신고를 한 사안에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한 밴드 내 불법복제물도 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
 심의위원회는 사후검열 문제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위축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음
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, 행정법 교수님으로 구성된 시정권고 제도 연구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, 연구 결과는 추후 보고 드리겠음
- B 위원 : 충분한 답이 되었음
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시정권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
- C 위원 :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불법복제물이 판매된 건에 시정권고를 가결하면 해당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수익금 처리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, 보호원이 수익금 배분이나 손해배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아니함
- A 위원 : 시정권고의 종류와 관련하여,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경우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그렇다고 대답함
- C 위원 : 심의 안건 중에 2004년 영화도 있는데 저작권 존속기간에 대해 질의함
- D 위원 : 저작권 존속기간은 70년으로 알고 있음
- B 위원 : 과거에 상영된 영화는 신작 영화와 관련 있는 영화이거나, 리메이크 영화이거나, 시리즈 전작 영화이기 때문에 심의의결(안)에 상정되는 것으로 사료됨
- D 위원 : 이는 어떤 배우가 유명해지면 해당 배우가 출연한 과거의 방송이 다시 방영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사료됨
- 김경숙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데드카피인 안건번호 제2019-138330호~13982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C 위원 : 해당 안건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복제물이 공중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
- A 위원 : '(영화)토르: 라그나로크 (2017)' 등 게시물 4,749건(안건번호 제2019-138330호~139824호)은 모두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
- D 위원 :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

합

- B 위원 :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

- 김경숙 분과위원장 :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

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125029호~12665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138309호~1398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3. 폐회 선언

-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1. 7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현용